

회보서

우)44904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남천로 247 경동청구타운 제상가동 1동호 2층

TEL. 052-264-1288
FAX.

문서번호 : 신일 2024-122

시행일자 : 2024-11-29

수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참조 : 경매9계

제목 : 감정 의뢰 에 대한 회보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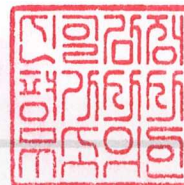
1. 저희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의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오며,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11.20자 귀 제 「2024타경103368」호로 의뢰하신 「윤학철 외 18명 소유물건(2024타경10336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건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감정하여 회보합니다.

첨부 : 1. 감정평가서 1부
2. 청구서 1부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윤학철 외 18명 소유물건
(2024타경103368 공유물분할)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감정평가서번호: 신일 2024-12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

SHINIL APPRAISAL CO.

(토지)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임재철

林 在 哲



감정평가액	삼억팔천삼백삼십오만원정 (₩383,350,000.-)					
의뢰인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울산지방법원 경매9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윤학철 외 18명 (2024타경103368)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2024.11.29	2024.11.27 ~ 2024.11.29	2024.11.2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1,025	토지	1,025	374,000	383,350,000
		이	하	여	백	
	합 계				₩383,35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소재 “성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으로서 울산지방법원의 경매(2024타경 103368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목적을 위한 감정평가입니다.

2. 대상물건개요

2.1 토지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동일))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접면도로	형상 지세	'24년 개별지가 (원/㎡)	비고
1	성안동 815	전	1,025	전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194,600	-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3.1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기본적사항의 확정)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인 2024년 11월 29일을 기준하였습니다.

3.2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라 2024년 11월 27일 ~ 11월 29일에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 및 가격자료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4.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4.2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감정평가조건

5.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함이 원칙이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5.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습니다.

6. 감정평가방법

6.1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련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 등에 의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2 개별물건별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대상물건(토지) 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되, 거래사례, 감정 평가전례 등을 통해 합리성을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6.2.1 토지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중 감정평가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비교법(비교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간 합리성을 검토하여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7. 그 밖의 사항

- ① 본건 토지의 정확한 지적경계는 경계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본건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감나무 및 가죽나무 등 수목 약 10여 그루(수고 약 2미터 내외로서 경제적가치는 아주 미미함)와 배추, 무 등의 농작물이 소재하나, 감정평가 목적(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평가)을 고려하여 이에 구매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평가하였습니다.
- ③ 본건 토지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토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1. 토지 감정평가액 산출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2.1 비교표준지 선정

(공시기준일 : 2024.01.01.)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원/m ²)
A	성안동 530	답	846	전	자연녹지	맹지	부정형 완경사	194,60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2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지가 변동율에 의한 방법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한 방법이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 재화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전국적인 물가지수로서 당해지역의 현실적인 지가변동추이를 적정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시점수정하였습니다. (미고시 기간은 전월 연장적용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녹지지역)

지가변동률	비고
표준지 A 1.01498	울산광역시 중구 (24.01.01 ~ 24.11.29) (녹지지역) 2024.01.01 ~ 2024.10.31 : 1.402 2024.10.01 ~ 2024.10.31 : 0.101 $(1 + 0.01402) * (1 + 0.00101 * 29/31)$ ≈ 1.01498

2.3 지역요인비교

본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합니다.(1.000)

2.4 개별요인비교

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 간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기호 (1) / 비교표준지 A >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0.97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취락과의 접근성 등에서 다소 열세합니다.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1.0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 $0.97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times 1.00 \approx 0.970$				

2.5 그 밖의 요인 보정

2.5.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 및 근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 38207판결(2004.05.14선고), 2002두5054(2003.07.25선고),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 30241-36538, 1991.12.28)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준시점에 있어서 비교표준지의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인근의 평가사례, 거래사례, 지가수준 및 지가동향 등을 기초로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합니다.

비교사례(전례, 거래사례)기준 비교표준지가액 : $\frac{\text{비교사례(전례, 거래사례)} \times \text{지가변동률}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가액}}$

시점수정한 비교표준지가액 : $\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지가변동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2 인근지역 내 감정평가전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 상황	접면 도로	용도지역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가	성안동 산200-0	구거	전	세로(불)	개발제한, 자연녹지	229,000	국유지 매각	2023.05.18
나	태화동 100	전	전	맹지	자연녹지	388,000	법원경매	2021.09.01
다	성안동 800	전	전	맹지	자연녹지	332,000	법원경매 (본건)	2021.05.11
라	성안동 산100-00	임	토지 임야	맹지	자연녹지, 1종일주	216,000	담보	2019.01.23

2.5.3 인근지역 내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접면 도로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①	태화동 100	전	585	맹지	자연녹지	220,000,000	376,068	2023.05.03
②	태화동 100	전	257	맹지	자연녹지	90,000,000	350,194	2023.11.01
③	성안동 00	답	1,051	세로(불)	개발제한, 자연녹지	200,000,000	190,294	2024.07.26

2.5.4 비교사례(평가전례 또는 거래사례) 선정 및 이유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는 비교사례로서 표준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평가전례 나>를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지목	이용상황	접면도로	용도지역	평가가격(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나	태화동 100	전	전	맹지	자연녹지	388,000	법원경매	2021.09.0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5 격차율 산정

비교사례 기호	사례토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나	388,000	-	1.04553	1.000	0.950	385,382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A	194,600	1.01498		-	-	197,515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격차율 산정		385,382 / 197,515				1.951	
시점수정치		울산광역시 중구 녹지지역(2021.09.01 ~ 2024.11.29) : 1.04553					
지역요인 비교치		비교사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0)					
개별요인 비교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개별요인 비교치
		1.00	1.00	0.950	1.00	1.00	0.950
비교표준지A는 비교사례 나 대비 획지조건(경사도 등)에서 열세합니다.							

2.5.6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시세 수준

구분	시세수준(원/㎡)	비고
본건 유사 토지	350,000원 ~ 450,000원	토지의 위치, 접면도로, 경사도 등에 따라 가격격차가 있습니다.

2.5.7 경매통계분석

(자료출처: 부동산태인)

구분	용도	울산광역시			중구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낙찰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1년간 평균	전	52.02%	57.50%	35	61.45%	45.51%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5.8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상기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감정평가전례, 거래사례의 가격수준,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시장가치 반영을 위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비교표준지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비교표준지A	1.95

2.6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결정단가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194,600	1.01498	1.000	0.970	1.95	373,600	374,000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3.1 거래사례의 선정

3.1.1 선정기준 및 선정

토지만의 거래사례이거나 토지만의 거래가액이 분리 가능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로서 인근 지역 내의 거래사례 중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이 본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아래의 거래사례를 선정합니다.

(자료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접면도로	용도지역	거래가격(원)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①	태화동 100	전	585	맹지	자연녹지	220,000,000	376,068	2023.05.0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유사토지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1.00)

3.3 시점수정치

지가변동률	비고
	울산광역시 중구 (23.05.03 ~ 24.11.29) (녹지지역)
	2023.05.01 ~ 2023.05.31 : 0.144
	2023.06.01 ~ 2023.06.30 : 0.097
	2023.07.01 ~ 2023.07.31 : 0.161
	2023.08.01 ~ 2023.08.31 : 0.119
	2023.09.01 ~ 2023.09.30 : 0.068
	2023.10.01 ~ 2023.10.31 : 0.123
	2023.11.01 ~ 2023.11.30 : 0.079
	2023.12.01 ~ 2023.12.31 : 0.257
	2024.01.01 ~ 2024.10.31 : 1.402
	2024.10.01 ~ 2024.10.31 : 0.101
거래사례 ① 1.02557	$(1 + 0.00144 * 29/31) * (1 + 0.00097) * (1 + 0.00161) * (1 + 0.00119) * (1 + 0.00068) * (1 + 0.00123) * (1 + 0.00079) * (1 + 0.00257) * (1 + 0.01402) * (1 + 0.00101 * 29/31)$ ≈ 1.02557

3.4 지역요인비교

대상 토지와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바, 지역요인은 대등합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5 개별요인비교

대상 토지와 거래사례 간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개별요인 비교치는 각 조건별로 세분하여 비교한 후 격차율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건 토지 기호 (1) / 거래사례 ① >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차율	비 고
접근 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농로의 상태		
자연 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획지 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0.97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경사도 등에서 다소 열세합니다.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규제의 정도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1.00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대체로 유사합니다.
		기타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 : $1.00 \times 1.00 \times 0.97 \times 1.00 \times 1.00 \approx 0.97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결정단가

본건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376,068	1.000	1.02557	1.000	0.970	374,114	374,000

4. 각 평가방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의 검토 및 토지평가액 결정

4.1 토지 시산가액

본건 기호	면적 (㎡)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단가(원/㎡)	시산가액(원)	단가(원/㎡)	시산가액(원)
1	1,025	374,000	383,350,000	374,000	383,350,000

4.2 토지 시산가액 검토 및 토지평가액 결정

상기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건 기호	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1,025	374,000	383,350,000	-
토지 평가액 합계			383,35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구분	기호	면적 (㎡)	적용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토지	1	1,025	374,000	383,350,000	-
감정평가액 합계				383,35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 감정평가전례와 거래사례가격,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정평가 관련 법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전	자연녹지지역	1,025	1,025	374,000	383,350,000	
	합 계			이	하	여	백	₩383,350,0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소재 “성안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빌라, 학교, 백양사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 교통상황

본건은 함월산에 위치하여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본건 동측의 타인 소유 농지를 경유하거나, 본건 남측의 백양사 쪽에서 등산로를 통해 도보로 접근 가능합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 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성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2017-11-02)(백양사 석조부도 및 칠성각 200m)<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7) 공부와의 차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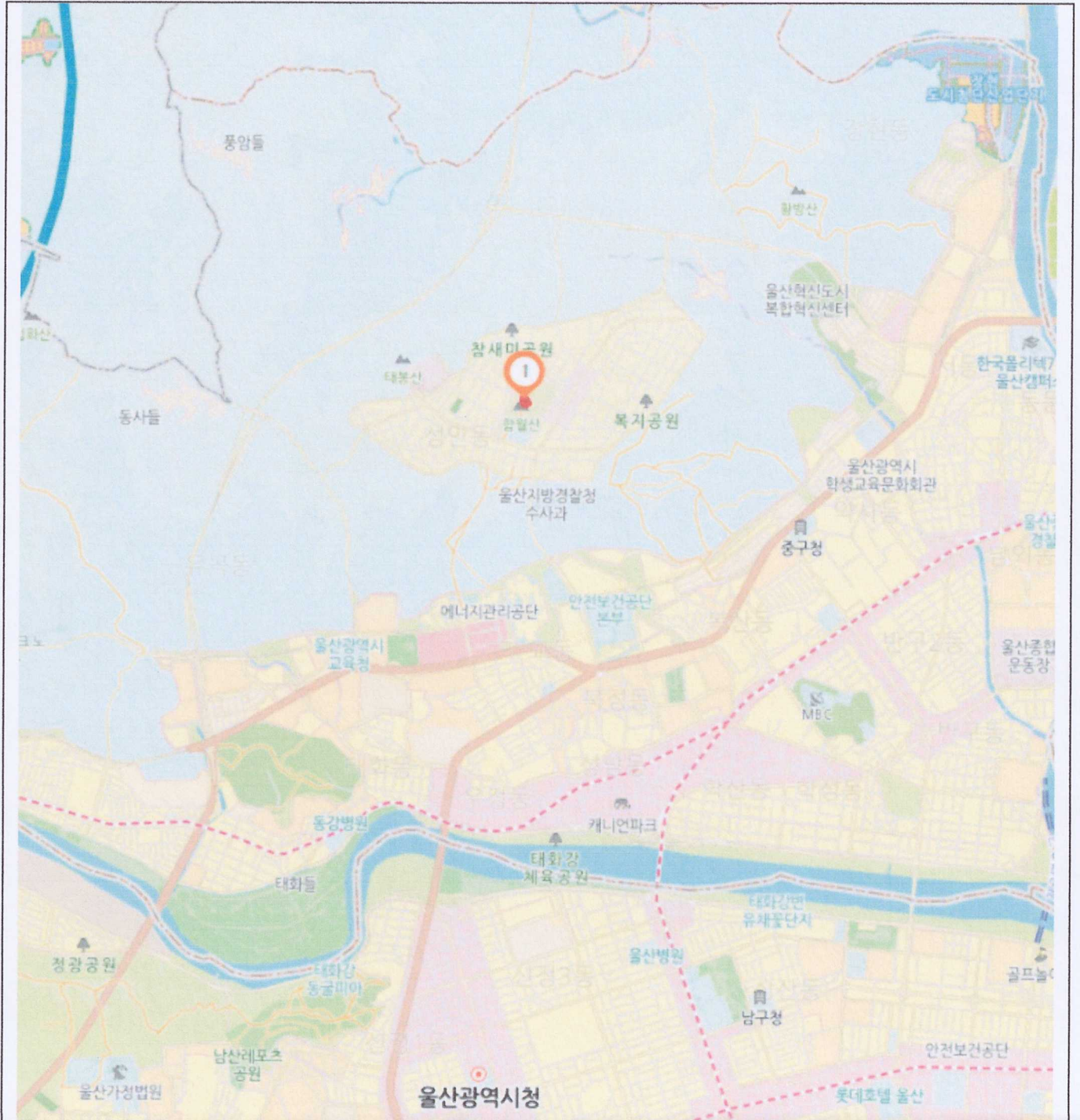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 기타사항 :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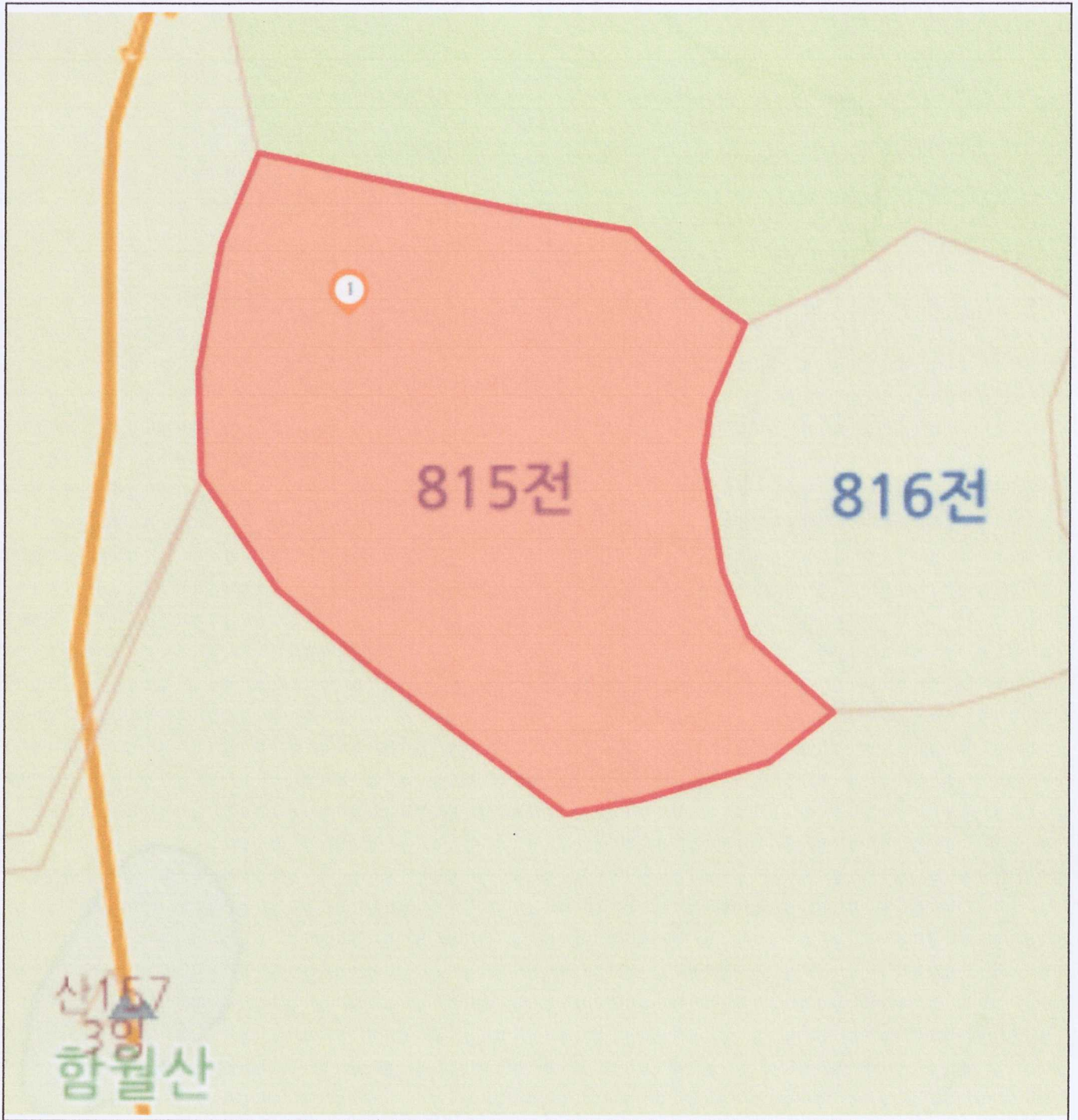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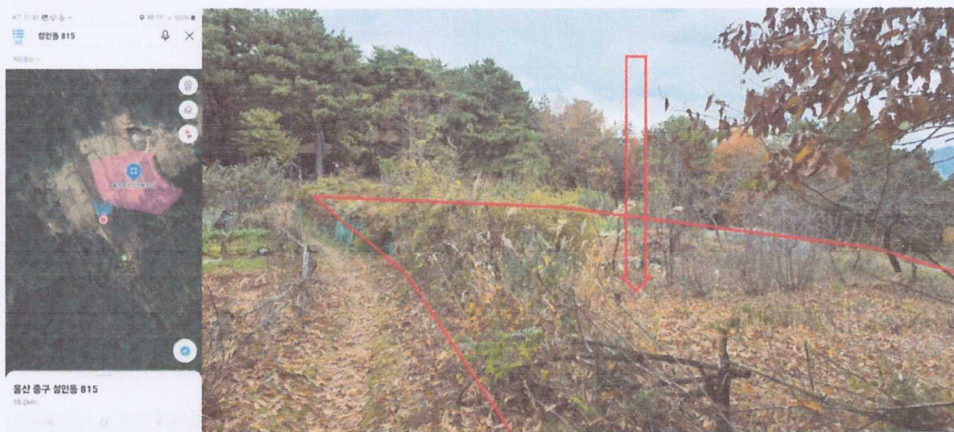
지 적 개 황 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서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남서측에서 촬영)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북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북측에서 촬영)

수수료 청구서

(전화: 052-264-1288, FAX:)

문서번호 : 신일 2024-122

수 신 : 울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병국 귀하

제 목 :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회신 및 수수료 납입통지

1. 2024.11.20 자 귀 제 「 2024타경103368 」 호로

의뢰하신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하여 회보합니다.

2. 위 건에 대하여 감정평가 보수 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평가수수료를 청구하오니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내 역

과 목	금 액	비 고
평 가 수 수 료	453,348	
실 비	여 비	212,800
	토지조사비	-
	물건조사비	(200,000+333,350,000 x 11/10,000)x 0.8배 ≒ 453,348
	공부발급비	2,000
	기타 실비	4,000
소 계	218,800	
특 별 용 역 비	-	
공 급 가 액	672,000	1,000원 미만 절사
부 가 세	67,200	
합 계	739,200	
기납부 착수금	-	
정 산 청 구 액	739,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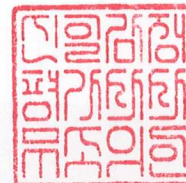
붙 임 : 감정평가서 1 부

※ 송 금 처 ※

하나은행 539 - 910433 - 72907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 임재철

신일감정평가사사무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제출용] -

고유번호 2342-1996-092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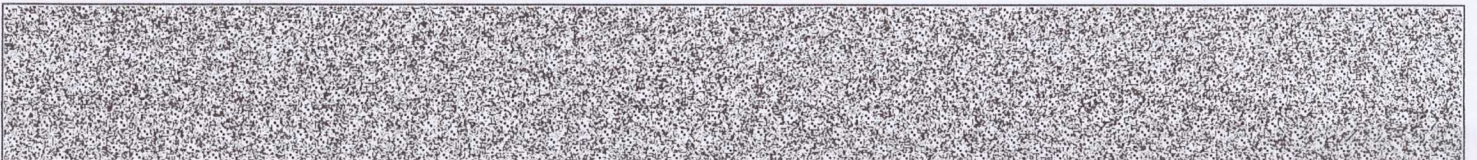


[토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929년4월22일	경상남도 울산시 성안동 815	전	310평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16일 전산이기
2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전	310평	1997년7월15일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2000년9월7일 등기
3	2011년2월18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전	1025㎡	면적단위환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전 1)	소유권이전	1935년12월11일 제18095호	1935년9월6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고기업 울산시 북정동 93 지분 2분의 1 황대성 울산시 우정동 130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8월 16일 전산이기
2	1번고기업지분전부 이전	2019년5월22일 제74371호	1972년9월7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공유자 지분 2분의 1 고동원 460606-***** 울산광역시 중구 새즈른해거리 34-17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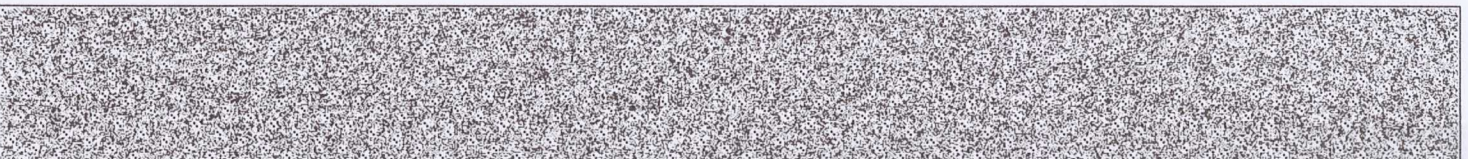


발행번호 234202230021941110109602010010921129ND01865347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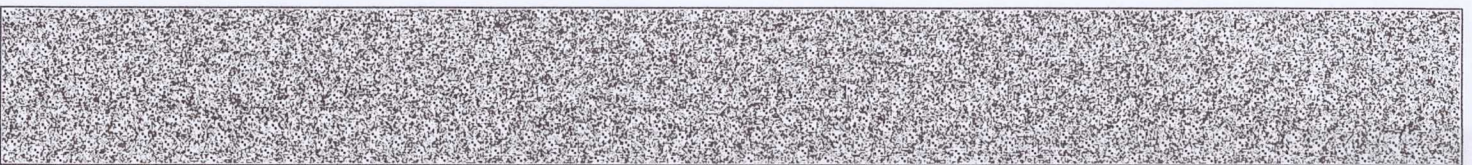
발급확인번호 AANN-RMNY-1867

발행일 2024/1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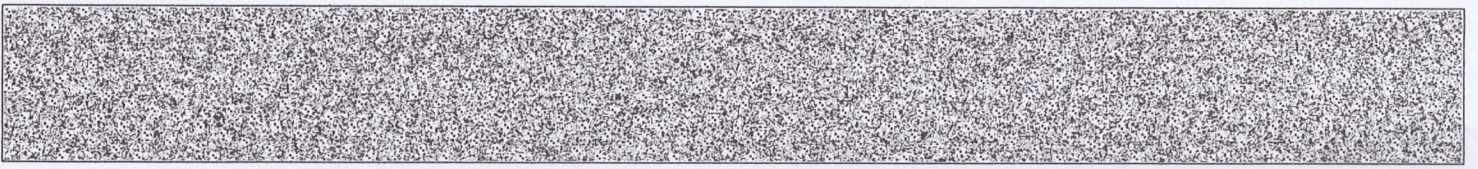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성남동)
3	2번고동원지분임의 경매개시결정	2021년4월28일 제61521호	2021년4월27일 울산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 정(2021타경428 6)	채권자 김규태 610116-*****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8번길 36 (옥동)
4	2번고동원지분전부 이전	2022년12월26일 제133539호	2022년12월23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공유자 지분 2분의 1 윤학철 721111-*****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 101동 221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5	3번임의경매개시결 정등기말소	2022년12월26일 제133539호	2022년12월23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6	1번황대성지분전부 이전	2023년4월14일 제37114호	1972년3월31일 재산상속	공유자 공동상속인 중 조선이는 2006년 1월 13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18130분의 1050 황규태 39020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지분 18130분의 315 황미혜 4105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7, 107동 1402호(좌동, 경남. 선경아파트) 지분 18130분의 1050 황규하 420329-*****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5동 2103호(우정동, 선경아파트) 지분 18130분의 1050 황규천 450519-*****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13번길 4-17, 306호(달동) 지분 18130분의 560 황미정 50122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지분 18130분의 560 황미주 531202-*****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공동상속인 중 황규한은 1995년 11월 2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18130분의 294 박인술 23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45 지분 18130분의 196 황청희 43102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2동 1302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지분 18130분의 196 황주희 45051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3동 503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지분 18130분의 196 황선영 47082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의곽로 54-14 지분 18130분의 196 황영희 5406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 41, 101동 304호(분당동, 동신빌라) 지분 18130분의 196 황선기 5701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에이동 1802호(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지분 18130분의 196 황선호 500317-*****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8-11 공동상속인 중 황규철은 1995년 12월 12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18130분의 980 황윤희 630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5-1, 503동 2201호(역삼동, 개나리에스케이뷰) 공동상속인 중 황규찬은 1993년 12월 1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18130분의 490 황선채 650703-*****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16, 202동 1603호(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지분 18130분의 490 황선경 68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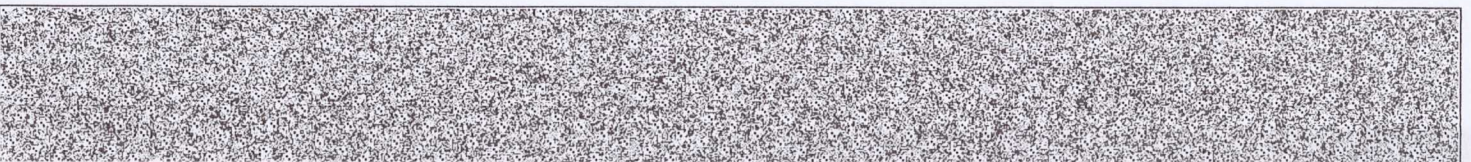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108동 1401호(장위동,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 공동상속인 중 황규석은 2009년 9월 10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18130분의 450 장우강 44062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지분 18130분의 300 황선향 71011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지분 18130분의 300 황선옥 73032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7	6번장우강지분, 황선향지분, 황선옥지분, 가처분	2023년4월27일 제41839호	2023년4월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가처분결정(2023카단21155)	 피보전권리 2023년 2월 2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류현규 410428-*****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149번길 104(설운동)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8	6번황규태지분, 황미혜지분, 황규하지분, 황규천지분, 황미정지분, 황미주지분, 박인술지분, 황청희지분, 황주희지분, 황선영지분, 황영희지분, 황선기지분, 황선호지분, 황윤희지분, 황선채지분, 황선경지분, 장우강지분, 황선향지분, 황선옥지분, 가처분	2023년5월4일 제45044호	2023년5월4일 울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23카단11294)	피보전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 윤학철 721111-*****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 101동 221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9	4번윤학철지분가처분	2023년11월1일 제117450호	2023년11월1일 울산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2023카단13989)	 피보전권리 2023.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류현규 410428-*****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149번길 104(설운동)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10	6번장우강지분전부 이전	2024년2월26일 제21774호	2023년10월16일 상속	공유자 지분 18130분의 225 황선향 710116-*****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쌍용예가) 지분 18130분의 225 황선옥 73032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쌍용예가)
11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5월9일 제55695호	2024년5월9일 울산지방법원의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개시결정(2024타경103368)	채권자 윤학철 721111-***** 울산 남구 화합로 250, 101동221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12	6번황규천지분압류	2024년5월28일 제63682호	2024년5월28일 압류(세무2과세외-11092)	권리자 남구(울산광역시) 2612
13	7번가처분등기말소	2024년11월6일 제125665호	2024년11월4일 해제	
14	9번가처분등기말소	2024년11월6일 제125937호	2024년11월4일 해제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갑구2번고동원자분 전부근저당권설정	2020년12월30일 제208891호	2020년12월3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50,000,000원 채무자 고흥식 울산광역시 남구 둔질로 262,2동 1601호(달동, 선경아파트) 근저당권자 김규태 610116-***** 울산광역시 남구 범대로8변길 36(옥동) 공동담보 토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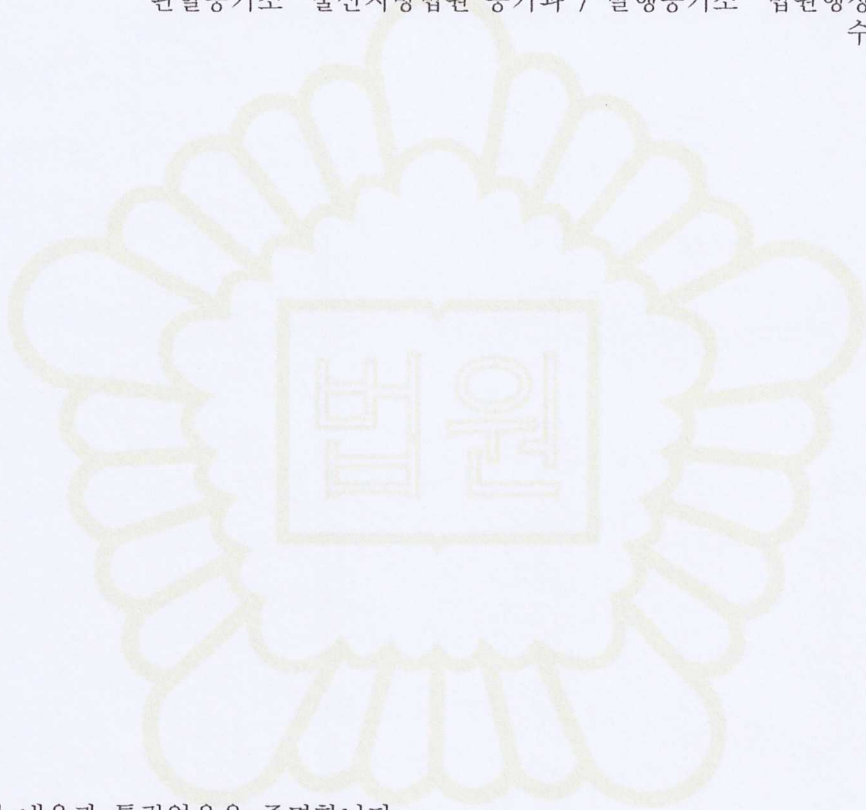


[토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덕하리 584-1 토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8-13 공동원지분 토지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68-18 공동원지분
2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22년12월26일 제133539호	2022년12월23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24년 11월 20일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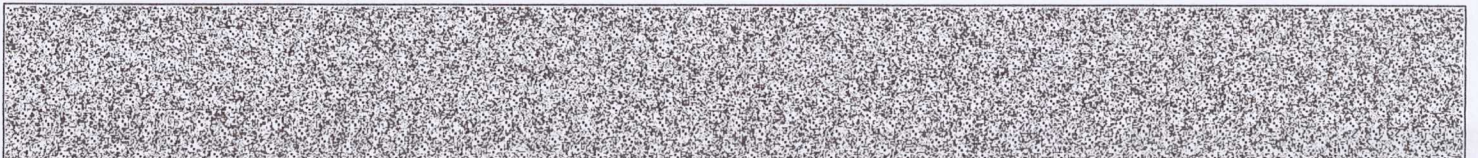
전산운영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기록사항 없는 갑구,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 으로 표시함.

[인터넷 발급]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234202230021941110109602010010921129ND068653471112

발급확인번호 AANN-RMNY-1867

발행일 2024/11/20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주의 사항]

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유번호 2342-1996-092186

[토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전 1025㎡

1. 소유지분현황 (갑구)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 소	순위번호
박인술 (공유자)	230705-*****	18130분의 29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45	6
윤학철 (공유자)	721111-*****	18130분의 9065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 101동 221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4
황규천 (공유자)	450519-*****	18130분의 10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13번길 4-17, 306호(달동)	6
황규태 (공유자)	390205-*****	18130분의 105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6
황규하 (공유자)	420329-*****	18130분의 105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5동 2103호(우정동, 선경아파트)	6
황미정 (공유자)	501220-*****	18130분의 56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6
황미주 (공유자)	531202-*****	18130분의 56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6
황미혜 (공유자)	410529-*****	18130분의 31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7, 107동 1402호(좌동, 경남. 선경아파트)	6
황선경 (공유자)	681106-*****	18130분의 490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108동 1401호(장위동,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	6
황선기 (공유자)	570131-*****	18130분의 196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에이동 1802호(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6
황선영 (공유자)	470823-*****	18130분의 19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54-14	6
황선욱 (공유자)	730320-*****	18130분의 3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6
황선욱 (공유자)	730320-*****	18130분의 22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10
황선채 (공유자)	650703-*****	18130분의 49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16, 202동 1603호(방학동, 대상타운현대아파트)	6
황선향 (공유자)	710116-*****	18130분의 30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6
황선향 (공유자)	710116-*****	18130분의 225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 쌍용예가)	10

등기명의인	(주민)등록번호	최종지분	주소	순위번호
황선호 (공유자)	500317-*****	18130분의 19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8-11	6
황영희 (공유자)	540610-*****	18130분의 1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 41, 101동 304호(분당동, 동신빌라)	6
황윤희 (공유자)	630102-*****	18130분의 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5-1, 503동 2201호(역삼동, 개나리에스케이프)	6
황주희 (공유자)	450511-*****	18130분의 1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3동 503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6
황청희 (공유자)	431022-*****	18130분의 19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2동 1302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6

2.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압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정보	주요등기사항	대상소유자
8	가처분	2023년5월4일 제45044호	피보전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 채권자 윤학철	박인술 등
11	강제경매개시결정	2024년5월9일 제55695호	채권자 윤학철	박인술 등
12	압류	2024년5월28일 제63682호	권리자 남구(울산광역시)	황규천

3. (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 (을구)

- 기록사항 없음

[참고사항]

가.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

나.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

다.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

라.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확인불가'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번호 : 202431110001883711

발행매수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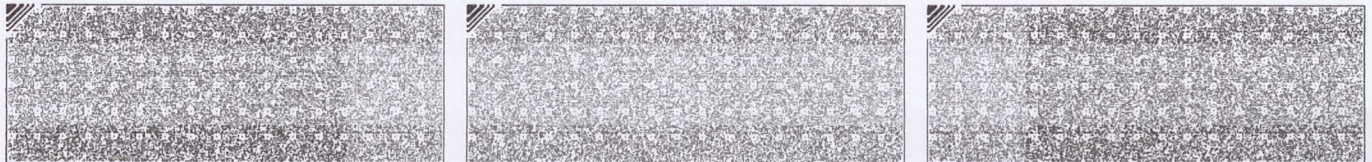
발급일 : 2024/ 11/ 20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처리기간

1 일

신청인	성명	임재철	주소			
			전화번호	010-8555-8473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815	전	1,025.0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이하공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성안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17-11-02)(백양사 석조부도 및 칠성각 200m)<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공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해당없음]				
확인도면						범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 보전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장애물제한표면구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 상대보호구역 ■ 경관녹지 ■ 자연녹지지역 ■ 법정동
<p>「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토지에 대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4/ 11/ 20</p>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청장</p>						<p>축척 1/1200</p> <p>수입증지 붙이는곳</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수수료 전자결제 민원</p> </div>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고유번호	3111010900-10815-0000
토지소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지번	815

도면번호	22
장번호	1-1
비고	

토지 표시

소유자

주소

지목	면적(m ²)	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	---------------------	----	------	------	----------	------

(01) 전	*1025*	(51) 1997년 07월 15일	2022년 12월 26일	(03) 소유권이전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 101동 221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721111-1*****
--------	--------	--------------------	---------------	------------	---	---------------

--- 이하 여백 ---

--- 이하 여백 ---

등급수정 년월일	1987. 05. 01.	1988. 05. 01.	1990. 01. 01.	1991. 01. 01.	1992. 01. 01.	1993. 01. 01.	1994. 01. 01.	1995. 01. 01.
토지등급 (기준수확량등급)	85	115	150	157	163	170	176	180
개별공시지가(원/㎡)	2018년 01월 01일	2019년 01월 01일	2020년 01월 01일	2021년 01월 01일	2022년 01월 01일	2023년 01월 01일	2024년 01월 01일	용도지역 등
개별공시지가(원/㎡)	143000	148000	150000	191500	203500	191000	194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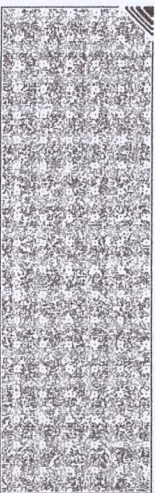
토지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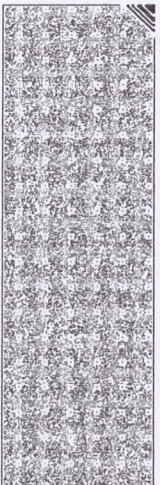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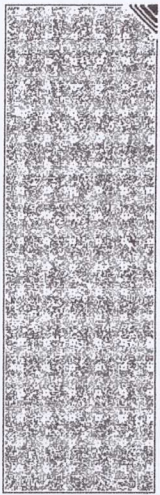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311010900-10815-0000		장 번호	1
토지소재	울산광역시 중구 삼인동		비 고	
순번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지번	815	
		소유권 지분	소유자	
000004	2022년 12월 26일 (03) 소유권이전	1/2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50, 101동 221호(삼산동, 벽산강변타운)	
000005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1050/181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000006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315/181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27, 107동 1402호(좌동, 경남.선경아파트)	
000007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1050/18130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3길 9, 5동 2103호(우정동, 선경아파트)	
000008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1050/181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113번길 4-17, 306호(달동)	
000009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560/181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000010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560/18130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94번길 19-18, 303호(달동, 동서4차아파트)	
000011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294/181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가 145	
000012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196/1813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2동 1302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000013	2023년 04월 14일 (03) 소유권이전	196/1813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63번길 2, 103동 503호(죽전동, 대지마을중앙하이츠빌)	
			등록번호	72111-1*****
			성명 또는 명칭	윤학철
				390205-1*****
				410529-2*****
				420329-1*****
				450519-1*****
				501220-2*****
				531202-2*****
				230705-2*****
				431022-2*****
				450511-2*****
				4505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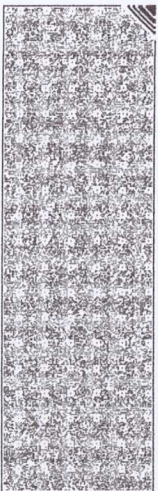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www.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크도로도 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지 연명부

고유번호	311010900-10815-0000		장 번호	2			
토지소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비 고				
순번	변 동 일 자 변 동 원 인	소유권 지분	지번	815	주 소	소유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000014	2023년 04월 14일	196/1813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 54-14			470823-1*****	황선영
	(03) 소유권이전					540610-2*****	황영희
000015	2023년 04월 14일	196/181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예원로 41, 101동 304호(분당동, 동신빌라)			570131-1*****	황선기
	(03) 소유권이전					500317-1*****	황선호
000016	2023년 04월 14일	196/1813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83-21, 에이동 1802호(성수동1가, 아크로서울포레스트)			630102-2*****	황운희
	(03) 소유권이전					650703-1*****	황선채
000017	2023년 04월 14일	196/181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38-11			681106-2*****	황선경
	(03) 소유권이전					710116-2*****	황선환
000018	2023년 04월 14일	980/18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5-1, 503동 2201호(역삼동, 개나리에스케이뷰)			730320-1*****	황선욱
	(03) 소유권이전						
000019	2023년 04월 14일	490/18130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16, 202동 1603호(방학동, 대산타운현대아파트)				
	(03) 소유권이전						
000020	2023년 04월 14일	490/18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계로36길 27, 108동 1401호(장위동, 꿈의숲대명루첸아파트)				
	(03) 소유권이전						
000024	2024년 02월 26일	525/1813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쌍용에가)				
	(03) 소유권이전						
000025	2024년 02월 26일	525/18130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63, 3705동 1001호(별내동, 별내신도시쌍용에가)				
	(03) 소유권이전						
							--- 이하 여백 ---

◆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90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지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마크로도 지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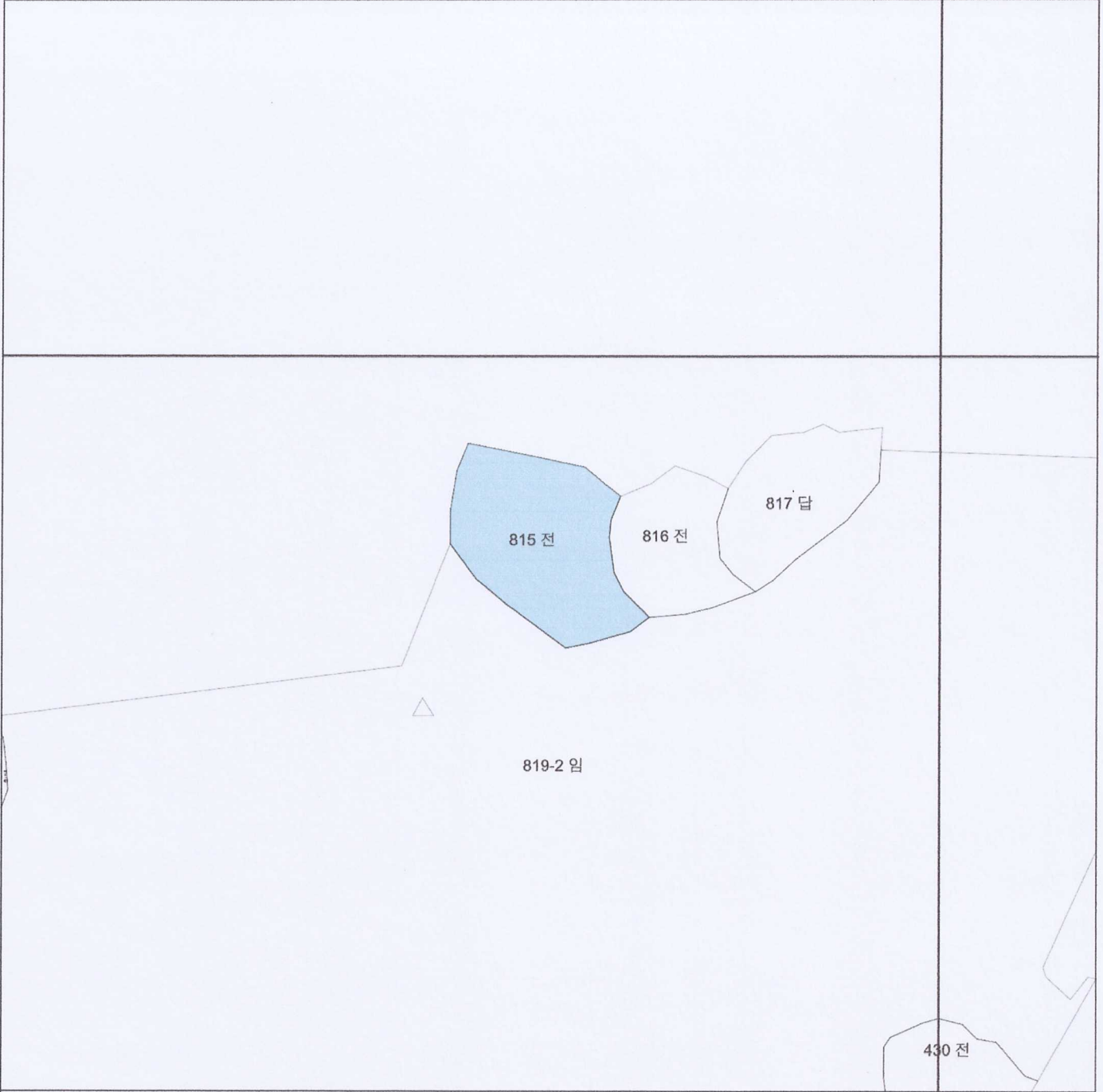


문서확인번호 : 1732-0712-3155-6855



지적도 등본

발급번호	202431110001883709	처리시각	11시 53분 47초	발급자	정부24
토지소재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지번	815번지	축척	등록:1/1200 출력:1/1200



지적도등본에 의하여 작성한 등본입니다.
이 도면등본으로는 지적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정부24(gov.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 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